

2026. 7.

미국 미국 저작권청, 뉴스를 위한 묶음등록 체계 마련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연구교수
이일호

1. 개요

미국 저작권제도에서 등록(copyright registration)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권리 행사를 위한 실질적인 관문이다. 미국은 베른협약 동맹국(Union country)으로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도록 하지만, 미국에서 창작·발행된 저작물(U.S. works)에 대해서는 등록(또는 등록 거절 결정)을 침해소송 제기의 요건으로 규정한다¹⁾. 연방대법원은 Fourth Estate 판결(2019)에서 이때의 등록이 신청서 접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저작권청의 등록 결정이 완료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바 있다²⁾. 더 나아가 침해행위가 개시되기 전(또는 발행 후 3개월 내)에 등록을 마쳐야만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과 변호사 보수(attorney's fees)를 청구할 수 있다³⁾. 실손해 입증이 어려운 다수의 소액 침해에서 법정손해배상은 사실상 유일하게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므로 '적기 등록'이 권리구제의 핵심 전제가 된다.

언론 저작물의 등록은 전통적으로 '묶음등록(group registration)'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⁴⁾. 이는 저작권법이 저작권등록관(Register of Copyrights)에게 등록을 위한 행정상 분류와 납본 요건을 정하고, 관련 저작물을 1건의 신청/1회의 수수료로 묶어 등록하도록 허용할 재량을 부여한 데 따른 것으로⁵⁾, 이에 따라 신문은 한 달치 발행분을 묶어 '신문 묶음등록(Group Registration for Newspapers: GRNP)'으로 등록하는 식이다.

그러나 뉴스 소비가 인쇄물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기존 제도는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뉴스 웹사이트는 하루에도 수없이 자주 갱신되므로 개별 기사를 일일이 등록하기란 비현실적이고, 웹사이트 전체를 납본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곤란한 일이 될 수 있다. 언론사들은 현행 등록 옵션이 "비싸고 부담스럽다"고 호소해 오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저작권청(USCO)이 마련한 것이 곧 「뉴스 웹사이트 업데이트 묶음등록(Group Registration for Updates to a News Website: GRNW)」이다.

1) 17 U.S.C. § 411(a).

2) *Fourth Estate Pub. Benefit Corp. v. Wall-Street.com, LLC*, 586 U.S. 296 (2019).

3) 17 U.S.C. § 412.

4) 37 C.F.R. § 202.4(e).

5) 17 U.S.C. § 408(c)(1).

2. 관련 논의 및 경과

1) 배경

GRNW는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청이 수년간 인지해 온 문제의식이 규칙 제정으로 결실을 본 것인데, 저작권청은 최종규칙에서 그 계기로 (i) 온라인 언론출판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뉴스 웹사이트를 등록할 현실적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줄곧 받아온 점, (ii) 온라인 뉴스 콘텐츠의 급증과 그 유동적 성격이 기존 등록제도와 맞지 않았던 점, (iii) 이러한 문제가 2022년 「언론사를 위한 저작권 보호」 정책보고서에서 확인된 점, 그리고 (iv) 2011년 웹사이트의 등록이 어렵다는 점에 관한 정책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었던 점을 들고 있다.

규칙 제정은 비교적 신속했다. 저작권청은 2024년 1월 3일 규칙제정안 예고(NPRM)를 공고했고, 20건의 의견 중 1건을 제외한 전부가 신설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견 검토를 거쳐 2024년 7월 22일 최종규칙이 공표되었고, 같은 날 즉시 시행되었다⁶⁾. 이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지만, 그 합헌성에 관해 논란이 있었고, 현재 수수료 인상안이라는 후속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아래 “3) 남은 쟁점과 해결” 참조).

2) 내용

GRNW의 핵심은 뉴스 웹사이트의 ‘한 달치 초판과 그 기간 내 업데이트’를 편집저작물(collective work)로 보아 1건의 신청/1회의 수수료로 등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웹사이트 ‘전체’가 아니라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료(identifying material)”만 납본하도록 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상:** 뉴스 웹사이트의 업데이트로, ‘뉴스 웹사이트’란 지역, 국내 또는 국제 시사 정보가 일차적 출처로 설계되고 특정 주제에 한정되지 않는 광범위한 뉴스를 담은 사이트를 의미하는데, 이는 기존 ‘신문’ 정의를 그대로 반영한 것임(신문 등록 옵션의 온라인 확장)
- **편집저작물성:** 각 업데이트가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이어야 하고, 등록 범위도 저작물성을 갖춘 편집저작물에 한함
- **권리귀속:** 각 편집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work made for hire)이고, 저작자와 등록청구인이 동일인일 것
- **기간 및 동일성 요건:** 동일 URL의 동일 웹사이트에 같은 달에 발행된 것을 등록할 것
- **납본:** 각 갱신일의 홈페이지 ‘전체’를 PDF로 제출하되,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 등으로 전체 포착이 곤란한 경우, 직전 납본분으로부터 갱신을 보여주는 ‘첫 25 페이지’를 제출할 수 있음

6) Group Registration of Updates to a News Website, NPRM, 89 Fed. Reg. 311 (Jan. 3, 2024); Final Rule, 89 Fed. Reg. 58991 (July 22, 2024).

GRNW는 GRNP와 동일한 신청서를 사용하고 수수료도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95) 별도의 시스템 개발 부담 없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 결과 1개월 단위와 업무상저작물 한정이라는 제약이 그대로 이어졌고, 모바일 앱이나 XML⁷⁾ 납본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한 확장은 채택되지 않았다. 구제 측면에서도 웹사이트를 편집저작물로 등록하므로 그 구성부분 전체가 법정손해배상 산정에서 ‘하나의 저작물’로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개별 기사마다 별도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⁸⁾.

3) 남은 쟁점과 해결

GRNW의 가장 명백한 장점은 등록 비용을 대폭 낮추어 등록 참여를 확대한다는 데 있다. 특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지역 언론이 적은 비용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등록할 길이 열렸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침해소송 제기요건과 법정손해배상/변호사 보수 확보를 위한 ‘적기 등록’을 가능하게 하므로 실질적 구제로 이어지고, AI 학습을 위한 이용에 대한 집행에서 권리 입증의 토대가 되어 라이선스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다만 GRNW를 둘러싸고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된 바 있다. 첫째, 도입 단계에서 수정 헌법 제1조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었다. 전미작가연맹(National Writers Union), 전미보도사진가협회(National Press Photographers Association), 전미과학작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Writers) 등과 Gordon Firemark 변호사는 ‘뉴스’ 웹사이트로, 그것도 업무상저작물로 대상을 한정하는 제도가 표현의 내용에 기반한 차별(content-based discrimination)로서 엄격한 심사 대상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저작권청은 해당 옵션이 표현을 제한·강제하거나 특정 관점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점 중립적(viewpoint-neutral)’ 행정조치일 뿐이고 비(非)뉴스 저작물의 등록을 막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⁹⁾.

둘째, 2026년 현재까지 수수료 인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청은 2026년 3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수수료 개정안을 공고하면서 GRNW 수수료를 현행 95달러에서 350달러로 3.5배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다른 묶음등록에 대해서도 2배 정도 인상 예정)¹⁰⁾. 이는 뉴스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등 기업 이용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해 개인 창작자의 등록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에 뉴스미디어연합(News/Media Alliance)은 2026년 5월 4일 49개 언론단체 및 30개 주 언론협회와 함께 인상안의 철회 및 수수료 동결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가격 민감도가 높아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경우에 소규모 지역 언론이 등록을 포기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아 등록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7) Extensible Markup Language

8) 17 U.S.C. § 504(c)(1) 참조.

9) *Arkansas Writers' Project, Inc. v. Ragland*, 481 U.S. 221 (1987); *Vidal v. Elster*, 602 U.S. 286 (2024) 등 참조.

10) https://worktraining.com/knowledge/us-copyright-office-proposes-fee-increases-to-address-rising-costs-and-inflation?utm_source=chatgpt.com.

3. 시사점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무방식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등록에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저작자, 창작일 및 공표일에 관한 추정력(제53조), 등록된 권리 침해자에 대한 과실 추정(제125조 제4항), 권리변동 등록을 통한 제3자 대항력(제54조) 등이 그것이다. 특히 한미 FTA 이행 과정에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은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제125조의2 제3항).

우리의 등록실무는 개별 저작물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단, 다수 등록에 대한 할인 적용), 빈번히 갱신되는 온라인 뉴스에 특화된 묶음등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매일 다량의 기사를 생산하는 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에 개별 등록은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묶음등록제도는 언론사에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더욱이 이것을 AI 개발사 등을 상대로 관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등록이 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므로 미국만큼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이나 관련 실무 역시 달라서 유인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미국에서도 한 달치 업데이트를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임). 또 납본자료 보존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록 실무 및 절차 마련·개선 등 행정적 과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권 신탁관리 등 기존 집중관리 체계와의 관계 설정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GRNW는 묶음등록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고, 우리 저작권법상 등록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역시 보여준 선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s://worktraining.com/knowledge/us-copyright-office-proposes-fee-increases-to-address-rising-costs-and-inflation?utm_source=chatgpt.com